

2020 주택관리사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기본서 - 정오표(초판기준)

법개정으로 인한 정오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정 후
44	<p>(3) 신설 / 기존 (3)~(9)를 (4)~(10)으로 수정</p> <p>(3) 냉방설비의 배기장치</p> <p>①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①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p> <p>③ ②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p> <p>㉠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절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p> <p>㉢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p> <p>㉣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p> <p>④ ③의 ㉠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p> <p>㉠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p> <p>㉡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p> <p>※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p> <p>①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p> <p>②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 난간의 높이: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 난간의 간살의 간격: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p>
58	<p>(8)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단체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제규정을 ~</p>
190 ~191	<p>(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p> <p>① 이하 ㉠~㉣을 아래 내용으로 전체 수정</p> <p>㉠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p> <p>㉡ 사업주가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p> <p>㉢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p>

195	<p>(15) 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p> <p>① 이하 ㉠~㉣을 아래 내용으로 전체 수정</p> <p>㉠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p> <p>㉡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p> <p>㉢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p> <p>㉤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p>
198 ~199	<p>(18) 가족돌봄휴직의 신청 등 다음에</p> <p>(19)~(23) 신설 / 기존 (19)~(21)을 (24)~(26)으로 수정</p> <p>(19) 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p> <p>①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p> <p>②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p> <p>(20) 가족돌봄휴직의 종료</p> <p>①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①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p> <p>㉠ 위 ①에 따라 통지를 하고 ②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p> <p>㉡ 위 ①에 따라 통지를 했으나 ②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p> <p>㉢ 위 ①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p> <p>(21)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p> <p>①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하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사유,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근무종료시각,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①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 30일 이내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해야 한다.</p>

	<p>③ ① 및 ②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허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p> <p>④ 사업주는 ① 및 ②에 따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22)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p> <p>①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 사유, 당초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에 따른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 연장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근무종료시각,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①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연장하는 기간을 지정하여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해야 한다.</p> <p>③ ① 및 ②에 따른 기간의 연장은 1회로 한정한다.</p> <p>④ ① 및 ②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 허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p> <p>⑤ 사업주는 ① 및 ②에 따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2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p> <p>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p>
205	<p>(25) 난임치료휴가</p> <p>③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p>
210	<p>1. 퇴직연금제도의 담보제공사유 中</p> <p>③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를 부담하는 경우</p> <p>㉠~㉣ 동일</p>
212	<p>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 中</p> <p>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p> <p>①~③ 동일</p>
212	<p>(11)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中 ㉡</p> <p>㉢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p> <p>㉠ 근로자 본인</p> <p>㉡ 근로자의 배우자</p> <p>㉢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p>

	<p>(6)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등</p> <p>③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p>
268	<p>※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p> <p>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p> <p>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p> <p>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p> <p>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p>
273	<p>(13) 심판청구</p> <p>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p>
361 ~362	<p>(4) 관리사무소 등의 설치기준(① 전체 수정 / ③ 신설)</p> <p>①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때 세대마다 5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p> <p>㉠ 관리사무소</p> <p>㉡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p> <p>③ ①의 ㉡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p>
364	<p>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4퍼센트를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p>
386	<p>24번 문제</p> <p>다음은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에 대한 ~? 해설: ~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p>
446	<p>③ 일반검사 中</p> <p>기초조사 - 관중, 관경, 배관길이 항목을 관 종류, 관지름, 배관길이로 수정</p>